

瑞山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討報告書

2001. 3. 28
産業建設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2001. 3. 20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3. 21
- 라. 上程日字 : 2001. 3. 28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上下水道事業所長 文英燮)

가. 改正理由

- 물소비억제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상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책임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완화하였으며,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와 신규투자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임시 가설하는 일시 급수시설공사 "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5호).

- 일시급수공사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시급수 사용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함(안 제8조).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을 삭제.
-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85% 수준으로 평균 25%인상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구경별 기본요금제 규정을 정함(안 제28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현행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67.6%의 저렴한 수준으로 수도물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질환경 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며,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도모와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동안 조례를 운영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정비·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 하는 것으로써,
-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 530.97원에서 판매단가 359.32원으로 원가대비 67.7% 낮은 수준 요금징수로 공기업의 운영상태를 보면 전체자산의 51.2% 158억9천9백만원 부채를 갖고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에서 130억6천3백만원 정도를 계상하여 사업을 운영한 결과 매년 4천만원 손실액이 발생 적자의 공기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
-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정부의 지침과 계속되는 상수도 재정의 적자 해소는 물론 수도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원가 85% 수준으로 평균 25% 인상안으로 2001. 1. 10 서산시공고 제9호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000. 12. 20 서산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 정부의 소비자물가 연간 3% 수준으로 유지와 공공요금을 가급적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지향 추진하는 시책에서 서산시는 상수도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제와 업종별 형평성 고려 평균 25% 인상은 수익자 부담과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계속되는 재정적자 해소와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29호
의결 년월일	2001. . . (제 회)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3월 21일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3호
----------	--------

제출년월일 : 2001. 3. 2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상수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요금납부의 연대책임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며
- 불명확한 일시급수공사에 대한 승인조건을 명시하여 민원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정성도모와 신규투자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일시급수공사의 정의와 승인조건 신설(안 제5조, 제8조)
- 나. 상수도 급수장치에 대한 의무 승계사항 폐지(안 제24조)
- 다. 수도사용자 등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사항 폐지(안 제27조제2항)
- 라.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85% 수준으로 평균 25% 인상(안 제28조)
- 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구경별 기본요금제 도입(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 나. 입법예고: 2001. 1. 10.
- 다. 규제개혁심의회('99. 6. 23) : 완화 및 폐지
- 라.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00. 12. 19) : 인상안 가결.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시급수공사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공사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일시급수공사)①일시급수공사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토록 하며,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승인 요건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
2.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외 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3. 공공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일시급수신청자는 급수 승인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필하여야 하며, 다량 급수로 인하여 인근지역 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당해 영향이 해소된 경우로 한한다.

③일시급수기간은 1년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자가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취소 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4조 및 제27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중 “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을 “ 요금
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과 별표 2-1의 구경별 요
율표에 의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의 별표2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별표2-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생략) 1.~4. (생략) 5. (신설)	제5조(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일시급수공사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임시 가설하는 급수 시설공사
제7조(삭제 99. 9. 10)	제7조(생략) 현행 8조와 같음
제8조(생략)	제8조(일시급수공사)①일시급수공사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토록 하며,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승인 요건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 2.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외 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3. 공공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일시급수신청자는 급수 승인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필하여야 하며, 다량 급수로 인하여 인근지역 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당해 영향이 해소된 경우로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p>	<p>③일시급수기간은 1년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자가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취소 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p> <p>제24조 (삭 제)</p>
<p>제27조(요금징수)①(생략)</p> <p>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p>	<p>제27조(요금징수)①(현행과 같음)</p> <p>②(삭 제)</p>
<p>제28조(요금)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8조(요금)--- <u>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과 별표2-1의 구경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u></p> <p>-----</p> <p>-----</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별표2] 업종별요율표			[별표2] 업종별요율표				
업종별	구분	사 용 요 율		업종별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 ² /월)	m ² 당 단가(원)	업종별		사용구분(m ² /월)	m ² 당 단가(원)	
가 정 용	· 1~10	240	가 정 용	· 1~10	250		
	· 11~20	270		· 11~20	300		
	· 21~30	310		· 21~30	380		
	· 31~40	360		· 31~40	480		
	· 41~50	420		· 41~50	640		
	· 51 이상	490		· 51 이상	790		
업 무 용	· 1~20	410	업 무 용	· 1~20	340		
	· 21~50	470		· 21~50	410		
	· 51~100	550		· 51~100	590		
	· 101 이상	640		· 101 이상	760		
영 업 용	· 1~20	500	영 업 용	· 1~20	410		
	· 21~50	550		· 21~50	540		
	· 51~100	640		· 51~100	680		
	· 101 이상	770		· 101 이상	820		
육 탕 용 1 종	· 1~200	400	육 탕 용 1 종	· 1~200	310		
	· 201~300	450		· 201~300	420		
	· 301~500	530		· 301~500	520		
	· 501 이상	630		· 501 이상	630		
육 탕 용 2 종	· 1~200	500	육 탕 용 2 종	· 1~200	550		
	· 201~300	700		· 201~300	800		
	· 301~500	800		· 301~500	950		
	· 501 이상	1,050		· 501 이상	1,250		
전용공업용	· 1~200	150	전용공업용	· 1~200	220		
	· 201 이상	250		· 201 이상	33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계 정 안	
	[별표2-1] 구경별요율표	
	계량기구경별	요 액
	13mm	910원
	20mm	2,550원
	25mm	4,100원
	32mm	7,290원
	40mm	12,310원
	50mm	18,870원
	75mm	45,780원
	100mm	78,060원
	150mm	170,070원
	200mm	241,570원
	250mm	-
300mm	-	

도내 상수도 요금인상 현황

(2001. 2월 현재)

(충청남도)

(단위 : 원)

자치단체	생산단가 (톤당)	판매단가	현실화율(%)	비 고
시군평균	583.2	426.6	73.2	
천안시	526.0	420.0	80.0	2000년 19.6%인상
공주시	615.8	392.4	51.8	2000년 25% 인상
보령시	630.0	554.0	88.0	2000년 35% 인상
아산시	533.5	480.0	90.0	2000년 48% 인상
서산시	508.0	359.3	67.6	
논산시	630.0	524.6	83.3	
금산군	604.0	365.2	60.5	
연기군	535.0	323.2	60.4	25% 인상예정
부여군	671.0	444.6	66.3	2000년 25% 인상
서천군	607.0	508.0	86.0	2001년 20% 인상
청양군	487.0	312.0	64.0	30% 인상예정
홍성군	585.0	358.0	61.1	
예산군	608.5	407.5	67.0	
태안군	594.0	487.0	81.9	2001년 30% 인상
당진군	643.6	459.1	71.3	40% 인상예정

※ 한국수자원공사 요금인상 현황

○'97. 8. 1 ⇒ 5.2%

○'98. 8. 1 ⇒ 20%

○2000. 12 ⇒ 9.8%